

제2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0. 9.16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9월 16일  
전문위원 배 금 택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0 - 73
- 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년 8월 1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9월 9일

### 2. 제안이유

무료법률 상담자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상담 방식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,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기록부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무료법률 상담자 대상 범위 확대(안 제5조제1항)
- 나.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방식 신설(안 제5조제4항)
- 다.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서식 변경 및 전산화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법률구조법」 제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(2020.7. 29. ~ 8. 18.) 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취지

- 무료법률상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상담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, 기존 법률상담기록부 서식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,
- 아울러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,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 개정내용

- 무료법률상담 대상자 범위 확대(안 제5조제1항)
  - 기존에 강서구 주민과 소속 공무원만이 법률상담이 가능하였으나 관내 주민 및 강서구 소재 직장인으로 상담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

- 무료법률 상담방식 다양화 규정 신설(안 제5조제4항)
  - 종전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·유선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규정함
-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서식 변경 및 전산화 규정 신설(안 제10조 및 관련 별지 서식)
  - 종전 상담기록부 서식은 상담자의 상담내용을 비롯하여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변경함
  - 접수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자파일로 같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“띄어쓰기, 어려운 한자어” 등을 일괄 정비(안 제1조,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3조, 제4조제1호 및 제3호, 제6조제2항, 제9조, 제11조, 제12조)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 대상 범위를 관내주민 및 강서구 소재 직장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소지의 제한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동시에 인터넷, 전화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음
- 또한, 기존 상담기록부 서식은 상담자에게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법률상담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여 기록부 서식 간소화를 통해 상담내용을 미기재함으로써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

- 다만,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무조건적인 상담기록 미비보다는 “(예시)법률상담 사례집 발간” 등 업무적으로 상담사례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,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상담내역을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

**□ 법률구조법**

제2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·운영하고,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